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검 토 보 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982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제안 배경	4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7
3. 법률 제정의 필요성	8
4. 조문별 검토	17
※ 참고자료	35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련 정관 규정	35
2. 해외 정보기관 산하 연구기관 사례	3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4. 11. 28.
3. 회부연월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인공지능·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설비를 연구·개발·시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임원 구성 및 선임방법, 이사회 설치 및 의결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임원의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재원(안 제11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운영·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사업(안 제12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설비의 연구·개발·시험,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 정책·제도의 연구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승인(안 제13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조정 등(안 제14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도록 함.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제안 배경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제1조에 따르면 동 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설비의 연구·개발·시험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국가정보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이관하려는 취지로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 하에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000년 1월 국가보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¹⁾되었으며, 국가보안시스템 연구개발, 국가사이버안전기술 연구개발, 국가보안 기반기술 연구 및 국가보안업무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참고자료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련 정관 규정 참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주요 재원은 정부출연금(약 66.7%) 및 수탁

1) 국가정보원은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의 암호장비 개발부서를 통합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과제 이행금(33.3%)으로, 2024년도에는 8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
바, 이 중 국가정보원 과제가 63개(74.1%)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1개, 국방부 9개, 기타 2개 등이었음.

현행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AI·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파생되는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보기술의 체계적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음.

「보안업무규정」²⁾,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
업 운영규정」³⁾ 및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지침」⁴⁾에 따라 국가보안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 관리를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동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
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

2)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암호자재 제작·공급 및 반납) ①·② (생략)

③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제작 등 암호자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제17조(적용특례) ① (생략)

② 국가보안기술 관련사항은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지침」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 기획, 승인,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음.

- (총괄)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기술 관련 연구개발업무 기획·조정·총괄

- (기획·승인)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각급기관이 소요제기한 연구과제를 검토·심의 후 국가
보안기술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협의하 연구과제 승인

- (관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 과제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과제 종료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결과물 제출

- (평가)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

통신부·기획재정부에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나, 과제 특성 및 보안상 성과 공개가 제한되어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에 애로가 상당하다는 의견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인력 증원이 8명에 불과하여 정보 기술수요의 60% 수준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며, 정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인력 증원으로 연구원들의 임금 하락을 초래하여 최근 3년간 연구원 37명이 퇴사하는 등 연구환경이 열악하여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안보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으로, 연구인력 73명 증원을 소요 제기 하였으나 8명만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연구원들의 임금을 십시일반하여 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2023년도 기준 23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중 보수총액이 22위에 그쳤다고 함.

제정안은 국가정보원 소관의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을 설립하여 현행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인원·예산·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전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이 연구원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안보기술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공감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동 제정안은 총 24개의 조문의 본칙과 8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제정안의 조문 체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연구원의 목적, 법인격, 설립, 사무소, 정관 등 기관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구원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비밀의 엄수,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보칙 및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부칙 규정은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설립절차 등 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와, 기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

본칙	연구원의 설립 목적 등 기관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격 제3조 설립 제4조 사무소 등 제5조 정관 제6조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	-------------------------------------	--

	연구원의 임명 및 이사회 구성	제7조 임원 제8조 이사회 제9조 원장
	연구원의 사업 및 운영	제10조 사업연도 제11조 운영재원 제12조 사업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제14조 지원·조정 등 제15조 업무협조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지식재산권 제18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보칙 및 벌칙	제19조 비밀의 엄수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 민법의 준용 제22조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부칙	-	제1조 시행일 제2조 설립준비위원회 제3조 설립절차 제4조 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제5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 법률 제정의 필요성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

즉,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29조5)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감독관청으로 하며, 같은 법 제18조6)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를 받음.

제정안에 따를 경우 신설되는 연구원은 국가정보원장의 조정·감독을 받게 되며(안 제14조제1항),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구성되는 연구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안 제8조제1항).

이 경우 기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⁷⁾ 등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 ④ (생략)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②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받아야 하며(안 제13조), 관련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됨.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안보기술연구원 관리체계 비교 >

구 분		국가보안기술연구소(현행)	국가안보기술연구원(제정안)
기본 관리체계 (감독관청 및 심의·의결 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이사회	국가정보원 -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이사회
임원	구성	소장, 부소장 외 별도 임원 없음	이사장과 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임기	소장 임기 3년, 연임 가능	3년, 원장은 연임 가능
	선임	소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임명	이사회에서 선임,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 당연직 이사(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방부차관,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임직원 1명) 제외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구 분	국가보안기술연구소(현행)	국가안보기술연구원(제정안)
사업	-국가보안시스템 연구개발 -국가사이버안전기술 연구개발 -국가보안 기반기술 연구 -국가보안업무 기술지원 -정부·민간·법인·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① 과학기술과 관련 장비·설비의 연구·개발·시험, ② 과학기술 정책·제도의 연구, ③ 과학기술 인력 양성 -상기 사업에 관련된 지원 업무 -상기 사업에 관한 연구 위탁 및 민관 협력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및 승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승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 국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승인 (국가정보원 → 기획재정부 → 국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연구개발 업무협의회(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검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 국가정보 원장은 심의·평가 및 수정·보 완 요구 가능
평가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	국가정보원장이 평가
연구 자율성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국회 통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제 * 비밀과제의 경우 민감사항 비닉처리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 * 연구과제 등 정보위원회에 공개

자료: 국가정보원 제출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
계에서 분리시켜 국가정보원 소관의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신설하는
제정안은 다음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연구원 행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과제 관리(국가정보원)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안보기술 연구·개발의 보안성·적시성 강화 및 업무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안보기술 연구개발은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바, 국가정보원이 연구원 행정 및 연구과제 관리를 전담하게 될 경우 민감기술 노출 등 보안 위해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이버공격 등 안보 관련 유관기관의 긴급 기술지원 요청에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보안상 업무성과 공개가 제한되어 기관 평가 및 예산 확보가 제한되는 현행 체계를 벗어나 연구과제의 기획·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환류시킴으로써 연구 성과에 부합하는 예산·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음.

둘째, 인력·예산 운영과 관련한 자율성 및 독립성이 강화되어 연구원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고, 우수 인력을 채용하여 유지함으로써 국가안보 관련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하에서는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관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및 인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은 연구원을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으로 신설할 경우 임금을 최고 인재들이 선호하는 기관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분원 설치, 기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과학기술 공제회 혜택 유지 등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⁸⁾.

셋째, 외국 정보기관 산하 연구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외 주요국의 정보기관은 정보업무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참고자료 2> 해외 정보기관 산하 연구기관 사례 참조),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동 연구를 통하여 최신기술 개발역량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소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 의한 외부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국가정보원법」⁹⁾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소관 예산에 관하여 실질

8)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참고 자료」, 2024.12.

9)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편성될 출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자료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보위원회의 심사 내역 및 결과는 공개가 제한되므로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외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국회 정보위원회에 업무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면밀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행 예산안·결산 심사 시에도 제출이 제한되는 자료가 존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실질적인 연구 성과 등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것인지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일각에서는 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소관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외부 산학연과의 협력 약화 등 비개방성·폐쇄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등이 제기됨¹⁰⁾.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구성원들도 국가정보원 산하로 이관 시 외부 협력 연구의 지속적 수행 등 연구소의 개방적 연구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¹¹⁾.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AI 대전환(AX) 시대에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등 보안산업이 우리나라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에서 AI를 활용하여 팔런티어 테크놀로지는 국방·정부 데이터 분석 및 보안 기반 의사결정 지원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

10) 전자신문, 「국정원, 첫 산하기관 생기나…‘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2023.12.18.

11)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참고 자료」, 2024.12.

ke)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 제공, 사이버 공격의 조기 탐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민간업체들이 사이버 보안산업을 선도하는 한편,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여 글로벌 IT대란이 발생하는 등 그 역기능도 부각되는 상황에서 출연연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측면, 민주적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정보원 소관의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미국에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민간 사이버 보안업체들과 정보기관 연구소 및 정부기관 간의 협업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업·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방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국가정보원은 제정안에 대하여 비효율적 연구·개발 체계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열악한 연구환경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안보기술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안보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12) 김일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정보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695호, 2025.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연구소의 실질적 관리주체가 국가정보원임을 인정하며 이관에 동의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¹³⁾.

또한, 제정안에서 연구원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연구회 등의 차관급 인사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여 개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안 제7조)하는 한편, 자율적 경영(안 제6조) 및 외부 연구협력(안 제18조)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과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이관하여 별도의 연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¹⁴⁾.

참고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에서 분리되어 해양수산부 소관 독립연구기관으로 신설된 사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2011년 12월 31일 제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¹⁵⁾이 있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

13)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정부 제출)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5.1.

1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에 대한 의견」, 2024.12.

15) 당시 제정 이유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4. 1. 26. 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독립연구기관으로 신설되었음.

4. 조문별 검토

가. 연구원의 법인격 및 정관

제2조(법인격)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등) ①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分院(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 제2조 및 제21조는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연구원의 재단법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연구원이 독립 법인임을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정보·보안 분야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조는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 시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원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안 제5조는 연구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명시하면서,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관의 변경을 감독관청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정관의 자의적 변경 등을 방지하여 연구원 운영의 체계성·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국가정보원의 차장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및 국방부차관.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임직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연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임원(원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장의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이사회 및 원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연구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당연직 이사 6명)와 1명의 감사를 두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심의·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7조제2항은 연구원 원장과 국가정보원 차장 외에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등 타 부처·기관 인사를 당연

직 이사에 포함하여 연구원의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개방적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연구원이 국가 차원의 안보기술 연구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안 제9조제4항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연임 규정을 둔 취지에 대하여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관」¹⁶⁾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원장의 성실 경영을 유도하여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연구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동 제정안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의 사례를 보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법」의 경우 소장의 연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¹⁷⁾,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법」의 경우 법에서 원장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정관」에서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관」

제32조의3(부설기관의 장) ① ~ ③ (생략)

④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7) 「국방과학기술연구소법」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③ (생략)

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9조(원장) ①·② (생략)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다. 연구원의 재원과 사업

제11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운영·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설비의 연구·개발·시험
2.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제도의 연구
3.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지원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 위탁 및 민관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연구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①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
2. 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 업무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정안 제11조제1항은 연구원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출연금 사용 및 정부의 재원 마련 노력을 명시함에 따라 연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임.

입법례를 보면, 안 제11조제1항과 유사하게 연구기관 등의 경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사례¹⁹⁾, 안 제11조제2항 전단과 유사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례²⁰⁾, 제정안과 같이 두 가지 방식

19)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병기한 사례²¹⁾ 등이 있음.

제정안 제12조제1항에서 연구원의 사업범위를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설립목적 달성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원의 임무·기능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13조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감독관청인 국가정보원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원의 사업이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연구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동 조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연구원 사업 승인 시 유관부처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정안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두었다는 설명임.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시행령 제정에 있어 연구원이 수행할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내용상 과도한 관여를 하거나 연구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제14조(지원·조정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연구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②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업은 제외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협조)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연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연구원의 시설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권)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4조제1항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연구원을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출연금이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사업계획·결과 승인 등 국가정보원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제외하고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심의·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연구계획 및 결과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원이 연구개발 결

과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고, 결과보고서 심의·평가 등을 통하여 국가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연구원이 수행할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수요 과제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내용상 과도한 관여를 하거나 연구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5조 및 제18조는 안보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및 융복합 연구 활성화,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하여 연구업무 지원 및 시설 보호 요청, 연구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동 조항들은 제정안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의 사례²²⁾²³⁾와 유사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7조는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연구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22)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0조(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구소의 시설 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시설보호를 위한 군 경계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2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의 소유 주체를 연구원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국가안보기술 사유화로 인한 기술 유출 및 이에 따른 안보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²⁴⁾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달리 연구원의 소유로 하는 권리 대상에 저작권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는 국가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소유하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와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련 지침 및 「저작권법」²⁵⁾상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국가정보원은 동 규정과 관련, 비밀과제 연구로 인하여 특허 출원, 논문 발표 등에 제한이 있는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안활동비 및 연구비 등 추가 지급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²⁶⁾.

24)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25)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6) 국가정보원,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실 요청자료」, 2015.1.

마. 비밀 엄수 의무 및 벌칙 규정 등

제19조(비밀의 엄수) 연구원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국가안보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연구원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의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23조)하고 있음.

이는 연구원이 다루게 되는 국가안보 관련 업무·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기밀 및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입법례로 「국방과학연구소법」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정형의 균형성 측면에서 적정 법정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 >

제명	규정
과기출연기관법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u>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 에 처한다.

제명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u>7년 이하의 징역</u> 에 처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u>10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1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국가안보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20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24조제1항)함.

이는 국가안보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바.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및 설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가정보원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관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한다)의 폐쇄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가 임명되거나 위촉되면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연구원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설립 당시의 이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연구원은 설립 당시 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연구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

의 설립과 동시에 연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價額)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명칭은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연구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및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부칙 제5조는 종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 설립등기일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 승계를 도모하는 한편,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연구원이 승계하도록 명시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동 조항들은 제정안과 성격이 유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당시의 부칙 조항과 유사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614

※ 참고자료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련 정관 규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관」

제32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3조에 따른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의 설치 및 폐쇄는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을 사전에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부설기관) ① 국가보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둔다. 영문으로는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약칭 NSR)로 표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보안시스템 연구개발
2. 국가사이버안전기술 연구개발
3. 국가보안 기반기술 연구
4. 국가보안업무 기술지원
5.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6.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7.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8.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인증 등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2조의3(부설기관의 장) ① 부설기관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원장이 임면하되, 연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해당 부설기관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④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소장자격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⑥ 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설기관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의4(예산회계의 독립) ① 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설기관의 회계 및 결산은 연구원의 회계 및 결산과 분리하여 실시한다.

제32조의5(부설기관의 운영) ① 원장은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본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해외 정보기관 산하 연구기관 사례

기 관		임무 · 목표	기관 특성	비 고
미국	In-Q-Tel (CIA)	첨단기술 스타트업에 투자, 정보업무 소요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생태계 조성 * 주요 성과: 팔란티어 사에 투자, 빈라덴 추적에 활용된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기업평가 · 투자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진과 업무 자문을 하는 이사회로 구성 -연 1억불 운용, AI · 자율 시스템 등 약 1,500개 기업에 투자 중	1999년 설립
	IARPA (ODNI)	국가정보 업무에 필요한 신기술 · 미래 고위험 기술 연구, 18개 정보공동체 소속 기관들에게 제공 * 주요 성과: AI 활용, CCTV 영상에서 잠재적 테러 · 범죄 활동 식별, 실시간 정보	-PM, 보조인력, 지원 부서로 구성 -연 3~7천억원(추정) 운용, 프로그램당 100~ 200억원 규모	2006년 설립
	CIA LABS (CIA)	정보수집 등 정보기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화 기술을 중점 연구개발	-자체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업 -CIA LABS를 통해 CIA 직원 개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도 지원	2020년 설립
	MoonShot Labs (NGA)	국가안보를 위한 신속 · 정확한 지리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산학연과 협업 촉진	MoonShot Labs 내 비밀 공간에서 외부 기술자들과 합동 연구 수행	2021년 설립
이스라엘	Libertad (모사드)	최신 정보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	-In-Q-Tel에 착안하여 설립 -조직구성, 운영체계, 투자 대상은 물론 CEO도 비공개	2017년 설립
영국	Cyber Accelerator (GCHQ)	사이버보안 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	예산 · 사무실 제공과 함께 GCHQ · NCSC 전문가의 멘토링도 지원	2017년 설립

주: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GCHQ(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자료: 국가정보원

